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403호 2022년 8월 9일(화)

입법예고

-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상위법령 위임조문 규정 반영, 조문 삭제, 띄어쓰기 등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업무처리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1) 「지방자치법」 위임조문 규정 반영(안 제1조)

-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021. 10. 19.)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관련 조문 삭제(안 제2조)

나. 기타 정비사항

- 1) 심의회 개최 시기 삭제(안 제4조)
- 2)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반영(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기획예산과(법무팀)
- 2) 연락처 : 전화 033-639-2806, FAX 033-639-2106
- 3) 전자문서 : zh041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기획예산과 법무팀(033-639-28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매주 간부회의 종료후에”를 “매주”로 한다.

제14조 중 “「속초시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 ----- -----.</p>
<p>제2조(구성) ① (생략) ② 제7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조례안이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날 까지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p>
<p>제4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주 간부회의 종료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p>	<p>제4조(회의) ① ----- 매 주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등</p>	<p>제14조(수당) ----- -----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p>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조례」-----
-----.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출·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으로 한다.

③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속초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속초시 규칙 제명의 띄어쓰기를 일괄정비하여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을 준수하고 시민들이 규칙 제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를 통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1) 속초시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안 제1조)

→ 속초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 규칙

2)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시행규칙(안 제2조)

→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3) 속초시농지개량사업환지처산금취급규칙(안 제3조)

→ 속초시 농지개량사업 환지처산금 취급 규칙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획예산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기획예산과(법무팀)

2) 연락처 : 전화 033-639-2806, FAX 033-639-2106

3) 전자문서 : zh041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기획예산과 법무팀(033-639-28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속초시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의 개정) 속초시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을 “속초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2조(「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시행규칙”을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 규칙”으로 한다.

제3조(「속초시농지개량사업환지처산금취급규칙」의 개정) 속초시농지개량사업환지처산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농지개량사업환지처산금취급규칙”을 “속초시 농지개량사업 환지 처산금 취급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속초시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속초시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u>	<u>속초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 규칙</u>

제2조(「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시행규칙</u>	<u>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u>

제2조(「속초시농지개량사업환지처산금취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속초시농지개량사업환지처산금취 급규칙</u>	<u>속초시 농지개량사업 환지처산금 취급 규칙</u>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